

『영국, 화장품(화학물질 제한) 규정』 심층분석 보고서

2025. 2.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33
통보국	영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148,922
작성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5
붙임. 규제 참고자료	6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영국 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DBT)와 제품안전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살리실산 메틸의 사용 제한을 통해 인간 건강을 보호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표함
- (규제요지) 동 개정안은 ①화장품에 포함될 수 없으나 특정 제한 하에서만 허용되는 물질과 ②준수기한에 대해 규정함

TBT 통보번호	GBR/97	통보일	2025년 1월 16일
		고시일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화장품(화학물질 제한)규정 The Cosmetic Products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 Regulations 2025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통상부, 제품안전표준사무국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DBT),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OPSS)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리실산메틸 규정 준수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초안 		
채택일	2025년 3월 31일		
의견수렴 마감일	2025년 3월 17일		
발효일	2025년 9월 30일		
준수기한	본문 [표 2] 참고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 No 1223/2009 조항 2(1)(a)에 의해 정의된 화장품, 에센셜오일 및 레지노이드, 향수, 화장품품 Cosmetic products are defined by Article 2(1)(a) of Regulation (EC) No 1223/2009,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Toilet Preparations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 2페이지 참고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148,922	HS Code	33

2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세부내용)

- (개요) 영국 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DBT)와 제품안전표준사무국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살리실산메틸의 사용 제한을 통해 인간 건강을 보호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표함
 - 동 개정안은 ①화장품에 포함될 수 없으나 특정 제한 하에서만 허용되는 물질과 ② 준수기한에 대해 규정함
- (적용범위) 동 개정안의 적용범위에는 살리실산메틸*가 해당함
 - * 살리실산메틸 - (EC) No 1272/2008에 따라 CMR(Carcinogenicity, Mutagenicity, Reproductive toxicity,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2급 물질로 분류됨. 비식품 및 비의약품 소비재의 화학적 안전성에 대한 과학 자문 그룹의 권고에 따라, (EC) No 1272/2008의 부속서 III을 개정하여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화장품 내 사용을 허용함
- (화장품에 포함될 수 없으나 특정 제한 하에서만 허용되는 물질) (EC) No 1223/2009 부속서 3의 표 끝 부분에 살리실산메틸이 추가됨([표 1] 참고)

[표 1] 화장품에 포함될 수 없으나 특정 제한 하에서만 허용되는 물질

참조 번호	물질 식별				제한	
	화학물질	일반적인 성분 이름	CAS 번호	EC 번호	제품 유형	최대 허용 농도
324	메틸 2-하이드록 시벤 조에이트	살리실산메틸	119-36-8	204-317-7	(A) 세정형 제품 (손 세정 제품 제외) (B) 손 세정 제품 (C) 바르는 피부 제품(얼굴 화장품, 스프레이 및 에어 로졸 제품 제외) (D) 립스틱 & 립밤 (E) 페이스 메이크업 제품 (F) 아이 메이크업 제품 & 리무버 (G) 치약 (H) 가글용 구강 청결제	(A) · 0.02%: 0.5~1세 아동용 제품 · 0.06%: 1세 이상 아동 및 성인용 제품 (B) · 0.02%: 0.5~1세 아동용 제품 · 0.6%: 1세 이상 아동 및 성인용 제품 (C) · 0.02%: 0.5~1세 아동용 제품

참조 번호	물질 식별				제한	
	화학물질	일반적인 성분 이름	CAS 번호	EC 번호	제품 유형	최대 허용 농도
					(I) 입안 분무 제품 (J) 알코올 기반 향수 (K)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에어로졸 (L) 헤어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M) 바디로션 스프레이	·0.06%: 1세 이상 아동 및 성인용 제품 (D) ·0.02%: 0.5~1세 아동용 제품 ·0.03%: 1세 이상 아동 및 성인용 제품 (E) ·0.05 % (F) ·0.002 % (G) ·2.5 % (H) ·0.1%: 6~10세 아동용 제품 ·0.4%: 10세 이상 아동 및 성인용 제품 (I) ·0.65 % (J) ·0.6 % (K) ·0.003 % (L) ·0.009 % (M) ·0.04 %

○ (준수기한)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통이 가능함

[표 2] 준수기한

제3조 - 준수기한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

- Regulation (EC) No 1223/2009¹⁾

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9R1223>

□ (규제원문 출처)

- ePing SPS&TBT Platform

- 원문링크: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GBR/25_00683_00_e.pdf

□ (규제원문 번역본) ※ 본 번역본은 원문을 기계로 일부 번역한 내용입니다.**2025년 화장품 (화학물질 제한) 규정**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1223/2009("해당 규정")(a)의 **제 31조(1)(g)(i) 및 제32조(1)(b)**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해당 규정의 **제31조(1)(g)(i)**에 따라, 국무장관은 본 규정의 **부속서(Schedule)**에 명시된 물질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1272/2008(c)에 따라 CMR(b) 2급 물질로 분류되었지만, 화장품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1조: 명칭, 시행일 및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2025년 화장품 (화학물질 제한) 규정"이라 하며,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2) 본 규정은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 적용됩니다.

제2조: 유럽 연합 규정(EC) No 1223/2009 개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1223/2009(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부속서 3(화장품에 포함될 수 없거나 특정 제한이 적용되는 물질 목록)의 표 끝 부분에 본 규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물질을 추가합니다.

제3조: 경과 조항

제2조(2)의 개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계속 유통될 수 있습니다.